

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[2003. 12. 15 조례 제23호]

개정 2004. 6. 30 조례 제 113호
전문개정 2005. 2. 18 조례 제 138호
개정 2005. 6. 28 조례 제 152호
개정 2005. 10. 19 조례 제 165호
개정 2005. 12. 2 조례 제 174호
개정 2006. 1. 10 조례 제 182호
개정 2006. 5. 26 조례 제 192호
전문개정 2007. 3. 23 조례 제 227호
개정 2008. 3. 7 조례 제 279호
전문개정 2008. 8. 6 조례 제 293호
일부개정 2010. 2. 12 조례 제 344호
전부개정 2011. 1. 7 조례 제 368호
일부개정 2012. 12. 21 조례 제 457호
일부개정 2013. 5. 16 조례 제 475호
일부개정 2013. 8. 1 조례 제 491호
일부개정 2013. 11. 8 조례 제 506호
전부개정 2016. 12. 23 조례 제 713호
전부개정 2018. 11. 2 조례 제 826호
일부개정 2020. 10. 30 조례 제 941호
일부개정 2022. 2. 4 조례 제1026호
(증평군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)
전부개정 2022. 12. 16 조례 제1064호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의 위임에 따라 증평군에 두는 행정기구·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본청

제2조(실·국의 설치) 증평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

청에 미래기획실, 행정복지국, 경제개발국을 둔다.

제3조(미래기획실) ① 미래기획실에 다음 각 호의 “과”를 둔다.

1. 기획예산과
2. 미래전략과

② 미래기획실장 및 각 과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4조(행정복지국) ① 행정복지국에 다음 각 호의 “과”를 둔다.

1. 자치행정과
2. 복지지원과
3. 행복돌봄과
4. 문화관광과
5. 체육진흥과
6. 재무과
7. 민원소통과

② 행정복지국장 및 각 과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경제개발국) ① 경제개발국에 다음 각 호의 “과”를 둔다.

1. 경제기업과
2. 환경위생과
3. 농업유통과
4. 축산산림과
5. 재난안전과
6. 건설교통과
7. 도시건축과

② 경제개발국장 및 각 과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3장 직속기관

제1절 보건소·보건지소·보건진료소

제6조(설치 및 기능·업무) ①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, 「지역보건법」 제10조·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·제10조,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15조에 따라 보건소,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(이하 “보건소등”이라 한다)를 둔다.

② 보건소는 「지역보건법」 제11조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.

③ 보건소등의 명칭,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.

제7조(소장) ① 보건소등에 각각 보건소장, 보건지소장, 보건진료소장(이하 “보건소장등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 보건소장은 증평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의 명을 받아 보건소등의 사무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8조(직급 및 분장사무) ① 보건소장등의 직급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14조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.

제2절 농업기술센터

제9조(설치) ① 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·농촌지도사업·교육훈련사업 등을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둔다.

②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는 별표 2와 같다.

제10조(소장) ①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둔다.

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11조(직급 및 분장사무)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4장 사업소

제12조(설치) ① 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둔다.

②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.

제13조(소장) ① 각 사업소별로 사업소장을 둔다.

② 사업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업소의 사무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14조(직급 및 분장사무) 사업소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장 읍·면

제15조(설치)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읍·면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·면사무소의 명칭, 위치 및 관할구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16조(읍장·면장) ① 읍·면에는 읍장·면장을 둔다.

② 읍장·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읍·면의 사무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17조(보조기관) 읍장·면장의 보조기관으로 부읍장·부면장을 두며, 군수가 정하는 공무원이 겸직한다.

제18조(직급 및 분장사무) 읍장·면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(2022. 12. 16 조례 제1064호 전부개정)

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보건소 등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(제6조제3항 관련)

구 분	보건소	보건지소	보건진료소
명 칭	증평군보건소	도안보건지소	남차보건진료소
위 치	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64-1 (보건복지타운 내)	증평군 도안면 화성로 65	증평군 증평읍 조정약수로 1147
관 할 구 역	증평군 일원	도안면 일원	남차1리·2리·3리, 율1리, 죽리, 원평리, 덕상1리·3리

[별표 2]

농업기술센터의 위치(제9조제2항 관련)

명 칭	위 치
농업기술센터	증평군 증평읍 내룡길 69-50

[별표 3]

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(제12조제2항 관련)

명 칭	위 치
수도사업소	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168
휴양랜드사업소	증평군 증평읍 율리휴양로 287